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2. 9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. 11. 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4. 11. 18.

다. 상정일자 :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4. 11. 26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 (2024. 2. 6. 공포 및 시행)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를 “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”에서 “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”으로 변경하여,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정의 변경 및 확대

(안 제2조 제1호, 제3호)

2) 조문정비 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 [장홍용 전문위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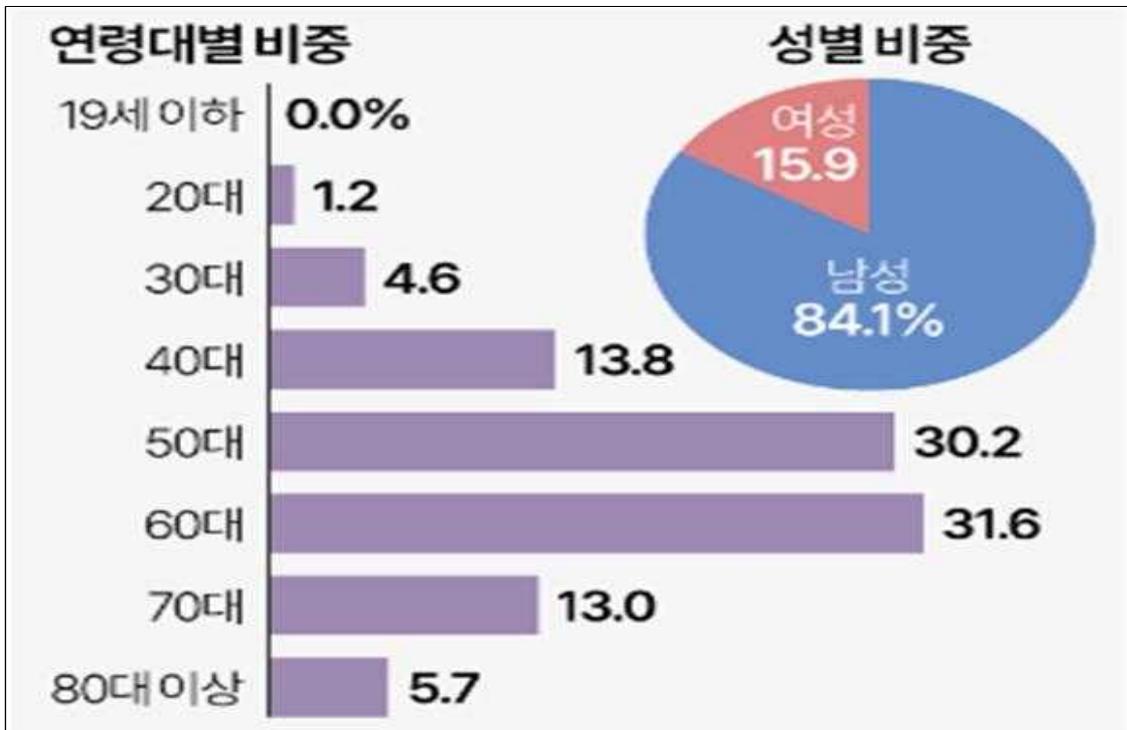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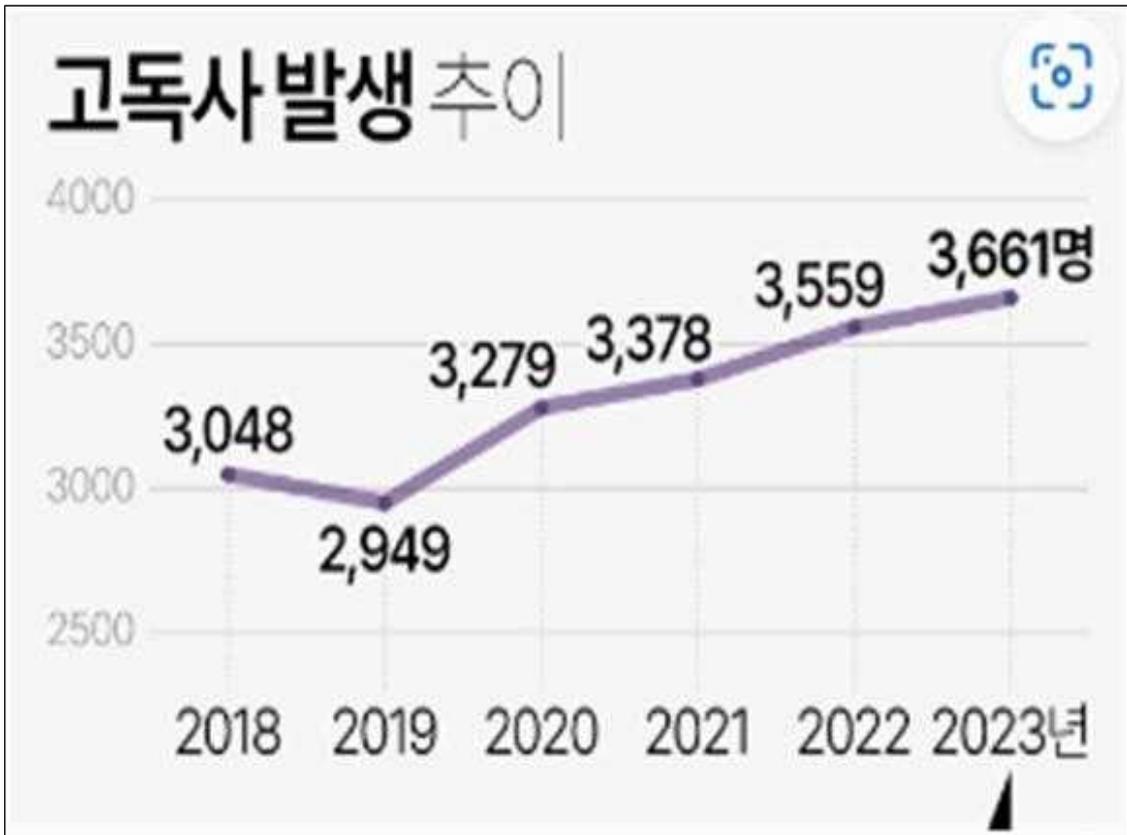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2024. 2. 6.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,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“홀로 사는”을 “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”으로 하고 “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위에 발견되는 죽음”을 “등으로 임종하는 것”으로 변경하고
- 같은 조 제3호에서는 “1인 가구”를 “가구”로
- 제4조에서는 “고립 가구”를 “고립가구”로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“관계법령 또는”을 추가하고자 함.

○ 종합검토의견

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, 사망자의 연령대가 고령자 중심에서 50대~60대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,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증가세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었음. (출처 : 보건복지부)



홀로 사는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의 가구도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, 고독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

한다는 취지로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참고 자료

1. 관계법규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3. 6. 13., 2024. 2. 6.>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